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125
----------	------

제출연월일 : 2003. .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골자

- 가.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및 평가, 주민 고충민원이나 생활민원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제보등 평가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나. 평가단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다. 평가단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라. 평가단의 활동비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연 42,000천원

- 주민자치센터 평가실비 : 20,000원 × 2.5일 × 70명 × 12월 = 42,000천원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3. 2. 26. ~ 3. 18.(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 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안산시주민평가단"(이하 "주민평가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각종 평가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 고충과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주민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평가
2. 주민 고충민원이나 생활민원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
3.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평가
4. 기타 시정에 필요한 주민 설문조사

제4조 (위촉) ①주민평가단은 성별·나이·직업 등에 관계없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청장, 동장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주민평가단은 7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위촉기간) 주민평가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시장은 주민평가단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신분증) ①시장은 주민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신분증에는 발급번호·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신분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보상) 시장은 주민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주민평가단으로 위촉받아 활동중인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안산시주민평가단으로 본다.

소관 실·과		주민자치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자치과장 장 동 선
	담 당 직위·성명	주민자치담당 윤 동 재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경 영 (행정 3446)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125
----------	------

제안년월일 : 2003. 5. 17.
발 의 자 : 의회 · 행정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주민평가단원의 위촉대상을 최대한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촉 방법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주민평가단의 위촉을 구청장, 동장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방법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는 것 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1항)
- 주민평가단을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 함(안 제5조)
-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삭제함.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청장, 동장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를 “공개모집하여”로 한다.

제5조 중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4조(위촉) ① 주민평가단은 성별·나이·직업등에 관계없이 회망자를 대상으로 구청장, 동장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p> <p>②(생략)</p>	<p>제4조(위촉) ①.....</p> <p>.....</p> <p>공개모집하여.....</p> <p>.....</p> <p>②(원안과 같음)</p>
<p>제5조(위촉기간) 주민평가단의 위촉기간은 <u>2년으로</u>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p>	<p>제5조(위촉기간).....</p> <p><u>2년으로</u> 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주민 평가단으로 위촉받아 활동중인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인사주민평가단으로 본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